



즉시 배포용: 2020년 3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보험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 대한 비용 분담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지시를 발표

현재 뉴욕주 워즈워스 실험실에서 수행되는 모든 COVID-19 검사는 완전히 보장돼

메디케이드 보증을 받는 뉴욕 주민들은 COVID-19와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해 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뉴욕 주민들에게 사용 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 건강 의료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사가 취해야 할 기타 일련의 조치 서술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의료보험사들이 응급실, 긴급 치료 및 진료실 방문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관련 비용 분담을 포기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메디케이드(Medicaid) 보증을 받는 뉴욕 주민들이 COVID-19와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든 뉴욕 주민이 비용 때문에 COVID-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뉴욕주의 워즈워스 실험실(Wadsworth Lab)에서 실시되는 모든 COVID-19 검사는 비용을 완전히 보장받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뉴욕 의료보험사가 취해야 하거나 권고받는 일련의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 가능한 혜택에 관한 정보를 뉴욕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 가능한 경우 원격 의료 상담 및 치료 제공, COVID-19 예방 접종이 가능해질 경우 비용을 보장하도록 준비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이며, 최첨단 워즈워스 검사실을 포함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뉴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누가 바이러스를 보유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뉴욕 주민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COVID-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서비스부는 다음과 같은 긴급 규정을 공시합니다.

1. COVID-19 검사를 위해 방문 시 건강보험사가 제휴 의료 제공자 진료실 방문 또는 긴급 의료 센터 방문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COVID-19 검사를 위해 방문 시 건강보험사가 응급실 방문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메디케이드 보장을 받는 뉴욕 주민들이 비용을 보장받도록 할 것입니다.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ERISA)으로 인해 뉴욕주에서 규제하지 않는 본인 부담 고용주 기반 건강보험에 등록된 뉴욕 주민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보험 범위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뿐만 아니라, COVID-19가 뉴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금융서비스부가 의료보험사에 발행하는 지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이용 가능한 혜택을 알리고, 소비자 문의에 신속하게 응답하며, 소비자의 응답 및 혜택을 간소화하는 데 필요한 수정 사항을 고려하도록 자원 투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 **원격 건강 의료 상담 및 치료 제공:** 금융서비스부는 특히 진료실 방문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료 전문가와 전화로 병원 방문의 필요성을 덜 수 있는 개인을 위해 참여 의료 제공자들과 함께 강력한 원격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보험사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 **사례 증가에 대한 의료 시스템 준비:**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들이 뉴욕에서 더 많은 COVID-19 사례가 진단될 경우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비 제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등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의료 제공자 네트워크가 적절히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에게 입원 진료에는 평생 또는 연간 한도를 둘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예방 접종이 가능해지면 비용 보장:** COVID-19 예방 접종이 가능해질 경우,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들에 19세 미만 아동의 예방 접종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금융서비스부의 지침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는 비용 부담 없이 즉시 예방 접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처방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금융서비스부는 공급망 문제로 인한 처방약 부족에 대한 보고를 통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공식적인 예외 절차를 통해 피보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처방약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 처방 외 처방약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응급 치료 보장:** 금융서비스부는 병원이 비 제휴 또는 해외에 있더라도 병원 시설의 응급 서비스에 대한 보장이 제휴 비용 분담으로 요구되며, 어떤 보험사도 구급차 서비스를 포함하여 응급 치료를 받기 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을 보험사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의료 청구서:** 금융서비스부는 보험사에 COVID-19의 검사 및 치료 관련 청구서를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상치 못한 의료 청구서를 받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